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8 - 120
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사유

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구 지역 현안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주요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기구를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마포구정연구단(한시기구) 설치 근거 마련(안 제3조의3)

나.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에 대한 조항 신설(안 부칙 제2조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 참조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조(기구의 설치 시 고려사항)부터 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까지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제외 법령

마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8. 11. 1. ~ 11. 8. (제출의견 없음)
- 2)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제외 법령
- 3)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제외 법령
- 4)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- 5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- 6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3(한시기구) 구정연구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부구청장 소속으로 마포구정연구단을 둔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른 마포구정연구단의 존속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제3조의3(한시기구) 구정연구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부구청장 소속으로 마포구정연구단을 둔다.</u>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
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안전행정국 총무과 전보아
연 락 처	02-3153-8216